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4. 12. 2.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31호로 2024년 11월 8일 김지연 의원 외 8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고, 역량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의원의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해 명시함.
-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 직무 범위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배우자 및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될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원 정책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안 제3조는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직무범위를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제한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근거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의엄수)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를 근거하여 규정함.
- 안 제9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를 준용하여 명시함.
- 다만 안 제3조(임용 및 배치)제3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1)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해당 법령에서는 정원 범위에서 임용됨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에서 일컫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와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

1)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4조(정원의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에 대하여 관리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제5항도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로 임명해야 되는 규정을 본 조례안과 같이 7급으로 규정한다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정원 기준에 위배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침해로 보여짐.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제5항2)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일반직지방공무원이 7급 이하가 가능하고 같은 법령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기존 일반직지방공무원도 소관 행정사무를 업무의 성질과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만 가능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2)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조문과 같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임용과 관련된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임받지 않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규정한 부분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되며, 다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한 제정이라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

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3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

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